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 용어 정의에 ‘두뇌 활동’ 포함 〉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1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스포츠’ 용어 정의에 ‘두뇌 활동’ 포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4. 17.
3. 회 부 일: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음. 이들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공인받고 있으며, 규칙성과 경쟁성, 관중성, 산업적 확장성 등의 요소를 갖춘 주요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 · 의지 ·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

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도 체스, 바둑, 브리지 등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스포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스포츠의 산업적·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스포츠’ 용어 정의에 ‘두뇌 활동’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스포츠’ 용어를 ‘신체 활동 기반 행태’ 대신 ‘신체 및 두뇌 활동 기반 행태’로 재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 화적 행태를 말한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 및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질 높은 삶을 목 표로 행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현행법에 따른 정의 규정상 ‘스포츠’ 및 ‘체육’은 모두 ‘신체 활동 기반’의 행태를 의미함.

[신체 기반 활동 관련 용어 정의 입법례]

용어	법률	정의
스포츠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u>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u> 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체육</u> 을 포함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u>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u> 를 말한다."
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u>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u> 을 말한다."

- 그런데 이스포츠, 바둑·체스 등 신체 활동 기반이 아니더라도 규칙성·경쟁성·관중성·산업성 등의 요소를 갖춘 두뇌 활동 기반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고¹⁾, 대한바둑협회(정회원), 한국e스포츠협회(준회원), 한국브리지협회·대한체스연맹(인정단체), 전국장애인바둑협회(인정단체) 등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가맹단체로 가입되어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올림픽정신을 ‘신체·의지·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으로 천명²⁾하

1) 이스포츠(DOTA2, League Of Legends,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5, FIFA ONLINE 4 등 7개 종목)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년 9월 23일 ~ 2023년 10월 8일)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2010년 11월 12일 ~ 2010년 11월 27일)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

2) 「Olympic Charter」, IOC, 2025. 1. 30.

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

1. Olympism is a philosophy of life, exalting and combining in a balanced whole the qualities of body, will and mind. Blending sport with culture and education, Olympism seeks to create a way of life based on the joy of effort, the educational value of good exampl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ly recognised human rights and universal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within the remit of the Olympic Movement.

는 등, 현행법상 ‘스포츠’ 정의가 스포츠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하여 기존 스포츠 개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스포츠’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바 정의 수정 여부는 개정 효과,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스포츠계·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먼저, 두뇌 활동 기반의 이스포츠·바둑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스포츠’ 종목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투자·지원 활성화⁴⁾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반면, ① 스포츠의 고유 속성 중 하나인 ‘신체성’의 의미 자체를 ‘전신운동·대근활동’에서 ‘인간의 행위·참여’로 확장하여야

3) 참고로, 「스포츠기본법」상 ‘스포츠’는 ‘체육’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지도사’는 ‘체육지도자’에 포함되는 등 ‘스포츠’ 및 ‘체육’의 개념 및 상호 간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정의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윤상진,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의 비교 고찰을 통한 법률적·정책적 제언”,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2024, 12권, 1호, 중앙대 체육연구소, p.57-78.)

- “「스포츠기본법」 제3조와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 사이에는 용어의 충돌로 인하여 기본법-진흥법 간의 총론-각론적 성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법률적 체계성 또한 확보되지 않았다.” (p.64-65.)

-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의 정의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어 양 용어 사이에 스포츠⊃체육의 포함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상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스포츠기본법」 제3조상의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의 개념이 거의 일치하여 스포츠=체육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p.71.)

- “‘체육’에 대한 정의를 국내·외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 시대에 걸맞은 ‘체육’의 정의를 명확히 확립한 후에 관계 법률상 용어를 ‘체육’에서 ‘스포츠’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p.71.)

4) 현행법 제15조(품질 향상 지원),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한다는 의견⁵⁾이 있고, 이 경우 ‘신체 활동’은 ‘두뇌 활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② 이스포츠·바둑 등은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어 ‘스포츠’ 정의를 확대하지 않아도 해당 법률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음.

- 또한, ③ ‘스포츠’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할 경우 수학경시대회 등 순수 두뇌 활동까지 ‘스포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⁷⁾⁸⁾, ④ 국·내외 스포츠계 등에서는 ‘스포츠’를 ‘신체 활동’으로 정의하는 추세라는 측면도 있음.

5) 유환일, “스포츠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체육학회지」, 2020, 제59권 제6호, p.13-25.

- 오늘날 스포츠와 비스포츠 경계선에 놓이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이 스포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소위 두뇌스포츠 혹은 마인드스포츠로 불리는 서양의 체스와 국내의 바둑이 스포츠로의 편입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e스포츠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면서 스포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중략) 스포츠로의 편입 논쟁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바로 신체성이다. (p.18-19.)
- “첫째, 신체성에 대한 의미의 확장이 필요하다. (중략) 스포츠에서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근 운동의 사용 여부로 판가름 되었다. (중략)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양궁이나 사격 등 올림픽 종목에 속해 있지만 대근활동, 즉 눈에 띄는 신체적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종목을 사례로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중략) 따라서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신체성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확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중략)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신체활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스포츠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체성의 개념을 인간의 참여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p.20-21.)

6) < 지원 관련 규정 >

- 이스포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제8조(자금지원 등),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제18조(포상) 등
- 바둑: 「바둑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제10조(창업 등 지원),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등
- 7)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순수한 두뇌활동(예: 스토쿠, 퍼즐, 보드게임, 수학경시대회 등)을 신체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신중검토 필요
- 8) (교육부 의견) 상위법 「스포츠기본법」 상 ‘스포츠’ 정의와의 부정합성, ‘스포츠’는 본래 두뇌 활동이 동반된 신체 활동이라는 점, ‘스포츠’에 이스포츠 등이 포함될 경우 초·중·고학생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신체 활동 축소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함.

[국·내외 스포츠계의 ‘스포츠’ 정의]

해석 주체		‘스포츠’ 정의
해외	유네스코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 1978) 모든 사람은 국가적 스포츠 전통에 따라 신체를 단련하는 모든 기회를 가져야 함
	유럽	(유럽스포츠헌장, 1992) 스포츠란 일상적 또는 조직적 참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모든 수준에서 경쟁에서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활동을 의미함
	일본	(스포츠기본법, 2011) 스포츠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 건강 및 체력의 유지증진, 정신적인 충족감 획득, 자립심 그 외의 정신함양 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에서 행해지는 운동경기 그 외의 신체 활동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21.10월)	• (현행 정의) ① 모든 신체활동은 두뇌활동 기반이며, ② 현행 정의가 ‘운동경기 및 야외운동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도 이스포츠·바둑 등을 포함하는 데 무리가 없음 • (두뇌활동 명시) 두뇌를 사용하나 스포츠가 아닌 활동(수학경시대회 등)까지 ‘체육’으로 오인될 우려
	체육학회 국제학술대회 (‘23.8월)	• (현행 정의) WHO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두뇌활동을 포함(“에너지 소비를 통한 골격근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하며, 현행 “체육” 정의(운동경기 등)도 e-스포츠를 충분히 포괄 • (두뇌활동 명시) 오히려 두뇌활동을 정의에 따로 명시하는 것은 순수 지적 활동(수학경시대회 등) 포함 여지 등 혼란이 우려되어 신중할 필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스포츠’ 정의는 「스포츠기본법」상 ‘스포츠’ 정의와 동일한바, 어느 하나가 개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도 함께 수정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 ‘체육’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 법안과 동시에 문체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21대 국회에도 ‘스포츠’ 및 ‘체육’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 문체위에 회부되어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⁹⁾.

[‘스포츠’ 및 ‘체육’ 정의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용어	개정법률 (심사경과)	현행법	개정내용
스포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18) (25. 4. 17. 발의)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 며 질 높은 삶을 위하 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 를 말한다.”	“건강한 신체 및 두뇌 활 동을 기반으로 질 높은 삶을 목표로 행하는 사회 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85) (21. 6. 25. 발의, 21. 9. 13. 상정/소위원회부, 23. 5. 25. 소위심사, 24. 5. 29. 임기만료폐기)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 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 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 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21) (25. 4. 17. 발의)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 여 건전한 신체와 정 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 다.”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 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 을 기르고 여가의 건전한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말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90) (21. 6. 25. 발의, 21. 9. 13. 상정/소위원회부, 23. 5. 25. 소위심사, 24. 5. 29. 임기만료폐기)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 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 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 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9) 심사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신체활동 기반의 스포츠는 두뇌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긴 하나 국내에서는 별도법이 제정돼 있음 등 스포츠계 종사자·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 진행 필요(계류)

문 의 처
02)6788-5375